

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 (제15조제10항 관련)

1.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

가.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

순번	자동차 구분	발생 기준
1	1) 승용자동차 2)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	- 50km/h 초과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.0m/s ² 이상일 때 발생될 것 - 2.5m/s ²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될 것
2	1) 승합자동차 2) 차량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	- 50km/h 초과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4.0m/s ² 이상일 때 발생될 것 - 2.5m/s ²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될 것
3	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장착 자동차	-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르거나,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하는 경우에 발생되고, 최대사이클을 종료하였을 때 소멸될 것

나.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의 작동기준

- 1) 긴급제동신호 발생 신호주기(4.0 ± 1.0 Hz, 필라멘트 광원은 $4.0^{+0}_{-1.0}$ Hz)에 따라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점멸될 것
- 2)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
- 3)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신호발생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

다. 표시장치

긴급제동신호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가능

라. 그 밖의 기준

- 1) 3) 및 4)를 제외하고, 견인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의 신호와 동시에 작동될 것
- 2) 견인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경우, 나목1)에 적합하게

작동될 것

- 3) 견인자동차에 연속적 또는 반연속적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가 작동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등이 점등되도록 전기커넥터를 통해 전기가 항상 공급되는 구조일 것
- 4) 피견인자동차의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, 동일하게 점멸되지 않는 구조도 가능할 것

2.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제동등 작동기준

감속도(m/s ²)	작동 기준
1.3 이하	점등 가능
1.3 초과	점등될 것